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1/ 12/ 22 통권 1550호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눈이 돌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 투명회계는 기업, 사회, 국가간의 신뢰수단이고 외부 회계감사는 각 조직간의 신용을 창출한다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소득세 측면에서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합니다
-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법인의 사업부 분할시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괄 승계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님 (p.14)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이름**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과와 稅計·經營 戰略

< 증여세와 상속세가 전혀 없는 면세점 상황금액과 규정 >

개념, 범위	상세내용, 공제금액, 비과세, 면세 이유
① 증여공제액	10년 단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자녀 등) :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② 증여세 비과세 (제46조)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재산 증가가 아니고 소비된 경우임), 피부양자 생활비,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우리사주조합원의 추가차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③ 창업자금 증여특례	조특법 30조의5 : 자녀의 창업자산취득 소요자금(30억-5억)×10%만 증여세 납부 → 결국 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 향후 상속재산에는 합산(제7항)
④ 가업승계 증여특례	조특법 제30조의6 : 자녀의 가업지분승계 : (35억 - 5억)×10% 증여세 (100억 - 35억)×20% 증여세 → 결국 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향후 상속재산 합산됨
⑤ 상속재산 합산	①과 ②의 선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음. ③과 ④는 선증여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됨
⑥ 가업상속 공제	가. 창업자금과 가업승계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여도 상속·증여세 법 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면 합산부담없음(중소기업 가업이면, 기업지분 총평가 합산액에서 200억원(10년-20년 경영), 300억원(20-30년 경영), 500억원(30년 이상 경영)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 부담 매우 적어짐) 나. 일반상속재산은 10년 초과된 선증여가액은 합산되지 않음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50호 / 주간 51호

2021. 12. 22.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료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여세와 상속세가 전혀 없는 면세점 상황금액과 규정	표지
긴급시사해설	투명회계는 기업, 사회, 국가간의 신뢰수단이고 외부회계감사는 각 조직간의 신용을 창출한다	2
CEO에세이	CEO는 눈이 돌이다	4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계정과목 문의	6
	- 교직원 진료비 감면 과세 관련	7
	- 시에서 관리하는 땅에 보수작업을 할 경우 계정처리	7
눈에 맞는 절세미인	소득세 측면에서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방법	10
	-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	11
직장인 Survival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5가지 지침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전자세원-750, 2021.02.18)	13
	-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 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법안-421, 2021.05.18)	14
세정뉴스와 해설	정부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확대 검토	15
마케팅 Tax consulting		14
세무정보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6
	-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합니다	24 30
회계정보	-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34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44
노무정보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투명회계는 기업, 사회, 국가간의 신뢰수단이고 외부회계감사는 각 조직간의 신용을 창출한다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 구분	의미, 효과, 해당사항, 구체적 연관성 등
① 사회구성원	개인은 기업 · 조직에 근무, 이들은 국가에 납세하며, 기업생산 · 국민소비 · 국가 재정이 순환됨.
② 인적 · 물적 활동	1년 내내 하루종일 재화 ·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생산과 소비가 발생하지만 이들은 거래 즉시 소멸되므로, 기업의 모든 활동의 총 합계 누적은 모든 활동의 동영상으로만 알릴 수 있으나, 회계는 재무제표 종이 한 장으로 나타냄
③ 회계그림자	회계는 제조 · 생산 · 서비스 · 소비 · 납세 · 국가재정집행 등 모든 거래의 그림자로 늘 붙어있고, 물질은 생산 · 소비로 없어지지만, 모든 거래는 회계행위로 기록이 영구히 남음
④ 다른 사업특성	의(옷생산), 식(먹거리, 식당, 음식), 주(건물, 아파트), 의료(치료), 법률(승패, 법원), 세무(절세납세)
⑤ 회계의 목적	영리기업, 비영리조직, 사회단체, 국가 등의 모든 거래총괄내용을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중립적으로 알림(알권리 충족)
⑥ 회계전달과정	거래 → 회계분개(좌우차변 · 대변) → 계정별원장전기 → 총계정원장 → 합계잔액시산표

⑦ 각종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잉여금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포함
⑧ 손익계산서	모든 구성항목은 과거 1년 동안의 실적 결과로, 결산종료일 현재 실물은 없으나 신뢰결과기록임(매출, 매출원가, 원재료,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비용, 법인세비용, 순이익 등 실적이지만 숫자로만 표시될 뿐임)
⑨ 재무상태표	자산 차변(예금, 매출채권 투자계정 등), 부채 대변(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자본금 등을 모두 영리기업, 비영리조직의 외부와 거래한 내용의 신용기록임(약속을 지킨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함)
⑩ 회계감사보고	기업이 투명회계로 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이는 아직 " <u>신뢰없음</u> "의 상태에 불과하며, 외부감사인의 독립·공정·성신회계감사를 거쳐야 " <u>신뢰있음</u> "의 결론에 이르는 것임(비록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감사보고서라 하여도 신뢰창출행위임)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10일 (금)	12월 13일 (월)	12월 14일 (화)	12월 15일 (수)	12월 16일 (목)
미 달 러 (USD)	1173.80	1178.20	1178.80	1183.60	1186.20
일 본 엔 (JPY)	1034.73	1038.47	1038.00	1040.57	1039.80
캐 나 다 달 러 (CAD)	923.60	925.75	920.18	920.16	924.55
홍 콩 달 러 (HKD)	150.55	151.07	151.10	151.72	152.02
위 안 화 (CNH)	185.12	184.86	185.14	185.77	186.03
유 로 화 (EUR)	1325.81	1332.96	1330.10	1332.38	1340.11
호 주 달 러 (AUD)	838.74	844.47	840.78	840.47	851.04
싱 가 폴 달 러 (SGD)	859.99	864.00	861.60	863.97	868.6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38	279.69	278.84	279.68	280.43

CEO는 눈이 둘이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무슨 똥단지같은 소리냐 싶지만 CEO는 연관(聯關)분석가다. 연관이란 여러가지 사실과 정보들이 일정한 관계에 따라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기업이란 그런 연관관계로 얽혀진 법인(法人)이다. 법인이란 법으로 인정된 인간, 생명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발바닥에 못이 박히면 그것은 발바닥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온 몸이 고통을 체득하고 반응한다. 생명체란 유기체다. 그러므로 기업의 모든 문제는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로 풀어가게 옳다. 현대기업은 서양산물이지만 치유는 동양의 지혜를 깊이 천착(穿鑿)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중심인물이 CEO다.

애꾸는 원근을 분간할 수 없다

따라서 CEO는 눈이 둘이어야 한다. 애꾸는 원근을 분간 못한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장, 단기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다. 공간적으로도 대내 문제인지 외부환경 인지 알 수가 없으니 대처도 오리무중, 안개 속같이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두 눈을 부릅뜨고서야 원근과 완급을 가려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처할 수 있다. 아예 애꾸는 장님보다 못하다. 장님은 장님임을 자인한다. 때문에 자기 부족함과 겸손을 디디고 다른 정보체계를 가동하므로써 정확성을 애꾸보다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상당수의 CEO가 애꾸다. 처음부터 재무관리로 입사를 하면 CEO가 될 때까지 그 분야만 종사한다. A사 경리과장, B사 경리상무, 요행스레 C사에서 대망의 CEO에 오른다. 그 CEO는 재무관리 밖에 모른다. 생산, 마케팅, 인사 등 경영의 제반기능과 관계를 전체로 보는 눈이 부족하다. 그것이 애꾸라는 말이다. 적어도 CEO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와 마케팅, 마케팅과 생산을 연관시켜 볼 줄 알아야 한다. 또 단기성과에 눈이 멀어(그나마 있는 한쪽 눈조차 감으니) 대세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조물주의 함의(含意)를 헤아려야 한다

CEO는 두 눈으로 여러 각도에서 보라는 조물주의 함의를 따라야 한다. 말단일때 와 달리 윗자리에 오르면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한다. 유연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귀도 둘이다. 귀가 둘인 것은 양쪽의 말을 모두 들으라는 뜻이다.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국은 회사내의 일부 친인척이나 어떤 연고의 인맥에 닿는 이들의 말만 듣고 경영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대소리나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 마음대로 눈은 감을 수 있으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위험(Risk)을 알리는 경보시스템 역할을 한다. 코는 하나이나 콧구멍은 두개다. 냄새를 맡고 숨을 쉰다. CEO의 코는 돈벌이가 되는 곳을 맡아내야 하고 또 기업의 새 바람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CEO의 코는 또 부패한 곳을 맡아내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CEO가 썩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입은 맛을 보고 먹고 마신다. CEO의 입은 기업에 자양분이 될만한 각종 물적, 인적, 지적 가치를 먹어서 성장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니 CEO의 입이 부정확한 빙땅을 먹어서는 안된다.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코는 냄새맡고 입은 맛을 보고 피부로는 촉각을 느낀다. 정보를 흡수한다. 유달리 입은 말을 한다. 입은 메시지를 안에서 밖으로 보낸다. CEO의 입은 다각적인 정보에 따른 판단 후 타인에게 뜻을 전달한다. 눈을 통한 비전을 전하고 두 귀를 통한 균형된 전략을 전하고 이윤을 찾아 코와 입이 냄새맡고 소화시켜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말을 한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눈과 귀는 두 개씩이다. 코는 한 개처럼 보이지만 냄새맡는 정보기능은 한개분의 몫이다. 그런데 하나의 입은 먹고 말하는 기능이 둘이다. 그러므로 말은 1/2만 하라는 것 같다. 특히 지도자인 CEO의 입은 경제하라는 것이다. 요즘 말 가지고 먹고사는 CEO가 상당수 있어 경계하고 싶다.

계정과목 문의

Q 신문사주체 컨퍼런스 개최 협찬요청이 왔는데, 사실상 업무관련성은 없습니다. 기부금인지, 광고선전비인지요?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았습니다.

A 광고홍보 목적의 협찬이라면 광고선전비로, 광고홍보목적이 아니라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해당 협찬의 목적은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교직원 진료비 감면 과세 관련

Q 부부가 모두 교직원인 경우, 교직원의 가족으로서 자녀가 받은 진료비 감면이나 학비 감면을 과세할 때 부부가 금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괜찮은가요?

진료비 감면액 중 일부는 부, 일부는 모에게 과세하는게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와는 연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부에게 자녀의 인적공제를 넣을 경우, 부/모에게 해당 자녀의 진료비 감면액을 나눠서 과세해도 되는지, 부에게 몰아서 다 과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원내 직원의 감면 관련하여 부부 모두가 직원인 경우 자녀의 학비나 진료비 감면액을 부/모 어느 한쪽에서 반영해야 하는지, 나누어야 하는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귀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땅에 보수작업을 할 경우 계정처리

Q 시에서 관리하는 공터에 회사와 시에서 각각 비용을 내어 보수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2천만원일 경우 회사 600백만원, 시 1400만원)

흙으로 된 공터에 바닥 평탄화작업, 잡초등 풀이 안자라도록 매트설치 등의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회사의 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귀사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 귀사의 비용을 들여 보수작업을 하는 사유가 질의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귀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접대성 경비이며 업무무관이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상절리 석재 구입

Q 당사의 조경용으로 주상절리 석재를 다량 구입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 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원가, 구축물, 기타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할지?

A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에 별도로 조경용 시설물을 토지위에 설치하는 경우 구축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출 부가세 신고 시 코드 문의

Q 회사가 용역 업체로부터 창고 용역을 제공 받고 있는데. 이때 창고 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에 수입 금액 제외와 매출 코드 중 어느 것으로 신고 하면 되나요?

A 귀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임대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발급분 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연말보다 연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근래에 와서 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자의나 타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퇴직체감 시기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앞당겨졌다고 하니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현실속에선 멀어져간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의해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중의 하나는 창업을 해야 하는 시기와 창업에 따른 세금절약 방법이다.

창업을 하는 경우 어떠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자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신의 사업에는 어느 쪽이 적합한지 잘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사람은 전년의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초기시설투자비용(인테리어, 기자재 등)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모조모 따져보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창업을 하기에는 연말보다 연초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연말과 연초중 언제 개업을 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까?

이에 대한 해답은 소득세 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는 장부가 아닌 정부에서 정해주는 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원칙이 바로 경비율제도 중 단순경비율적용이다.

단순경비율이란 정부에서 정해주는 일정정도의 율을 매출액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비용으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개업연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 사업이 잘돼서 많은 매출과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경우라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창업한 당해 연도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사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내면되므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보통 단순경비율은 기장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비용보다 더 넉넉한 금액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업한 연도에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을 가급적 키울수록 절약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이왕 시작할 사업이라면 11월이나 12월 등 연말에 창업해 1~2달의 적은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1월에 창업해 12달 동안의 매출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그러나 실제 창업연도에 매입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외).

창업한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실제 사업실행기간이 1년이 안되어도(즉, 연중에 창업한 경우라도) 연으로 환산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액으로 판정하게 되므로 창업 다음연도에는 창업연도의 혜택이 없어진다. 또한 사업초기에 결손이 발생되는데, 15년내 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첫연도가 일부 몇 달만으로 책정되므로 일부 억울한 면이 있다. 따라서 기왕에 창업을 할 생각이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연초를 선택해 하는 것이 좋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방법

정정신고 후 납부	기간	12월 1-15일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증부세액을 신고한 뒤 납부
	주의사항	과소신고 시 10-40% 가산세
이의신청	기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방법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
	주의사항	미납 상태로 이의신청시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100만원 이상 미납 시 매일 0.025% 가산)

화

■ 연금저축과 IRP 비교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근로소득 1억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300만원)	연 700만원
세액공제율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초과는 13.2%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 없음	70%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자유로움. 단 납입금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특정 사유 없으면 일부인출 불가능, 전부 해지는 가능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여부	내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 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 겸업	○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 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 '22.7.1. 이후 2억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 영위	○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 계산서 발급의무 → '22.7.1. 이후 2억원 이상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구분	내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미발급	2%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1%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 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 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 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 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5가지 지침

1.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소득 없는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원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슴 속에 응어리져 건강을 해치며, 결국은 손해만 남게 된다.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지독하게 하되 한 번으로 족하다. 중요한 것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다.
괴로워만 할 시간이 없다.

3. 상황을 인정하라

한번 고배를 마신 사람이 재기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데 있다.
'이렇게 했더라면' 타령만 늘어놓으면 소용이 없다. 과거는 소리없이 흘러갈 뿐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공상을 떨지 말라

'내 처지가 이런데' 하는 마음으로 위로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이런 저런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공상을 부리는 것을 적극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아직도 견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5. 조급해하지 말라

조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수 뿐이다. 오히려 한숨 돌리며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
을 바라보라. 놓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 어떤 일을 서둘러 덤벼들기보
다는 시야를 넓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여유와 느긋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법령부가-313, 2021.03.04

질 의

- 자문법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를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고자 컴퓨터 부품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함

질의내용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 신

위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3.2.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서면전자세원-750, 2021.02.18

질 의

-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자동차 세차업은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서면법령법인-1381, 2021.03.02

질 의

- 법인(금융회사등은 제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법인-421, 2021.05.18

질 의

- (질의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 판정기준 (갑설)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기준으로 판정 (을설)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기준으로 판정
- (질의2) 질의에서 갑설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배당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은 100%이나,
- 과세표준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면율은 100%가 아닌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제과-155, 2021.03.09

질 의

-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외 근무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시간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부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확대 검토

13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 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의 공 시가격이 3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뺀다.

기재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을 올리는 안이나 지분율공시가격 요건 중 하나만 적용돼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것이다.

또한 소유 지분율을 상속재산의 20%가 아니라 주택지 분의 20%로 변경하는 안도 거론된다.

종부세는 2주택부터 세금부담이 크게 뛰어들기에 1 주택자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 부담이 확 뛰어들다.

집은 고가의 자산으로 이러한 중과 자체는 다른 자산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 상속 주택은 자 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상속으로 받 은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소유 지분율이 낮다면 상속세는 내지만 보유세(종부세) 대상에서는 빼주는 것이 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 자가 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인 부 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역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국세증명, 정부24앱으로 금융기관에 자동 전송해준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때 내야 하는 국세증 명을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 정부24 앱에서 요청하면 국 세청이 금융기관에 해당 국세증명을 자동으로 전송해주 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9일부터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 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 한 제3자에게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본인의 국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 해달라고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기관 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국세증 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제공 주체에 해 당하지 않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금융기관에 자료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이나 공공 기관 민원 처리 때는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 하세요"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 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고 16일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 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 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 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다.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 (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다.

또한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 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 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국세청, 2021. 12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 1. 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 (근로자 혜택)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중고가구 소매업, ⑤ 공구 소매업, ⑥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 자동차 세차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종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 1. 1.부터 10일 이내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 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 → ('19년) 118.6 → ('20년) 123.0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 로 '본인인증' 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가입 시 자동 등록)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 시 체크 박스로 동의할 경우 자동등록 가능 * 본인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홈택스 (가입 후 별도 등록)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자동등록시스템 (☎ 126)	① 홈택스 > ① 현금영수증 > ① 한국어 > ②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붙임 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종
2010. 4. 1.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음식점,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010. 7. 1.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희주점, 무도유희주점, 산후조리원
2014. 1. 1.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2015. 6. 2.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2016. 7. 1.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017. 7. 1.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2019. 1. 1.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20. 1. 1.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2021. 1. 1.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2022. 1. 1.	8개 업종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2010. 4. 1.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 (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2014. 7. 1.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 → 10만 원)
2014. 7.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 → 100만 원, 연간 1,500만 원 → 500만 원)
2016. 1. 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 → 50만 원, 연간 500만 원 → 200만 원)
2019. 1. 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 (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 12. 3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붙임 2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 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 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제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 1.부터는 10일 이내 · 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제	- 미가맹 시 ·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붙임 3 - 자주 묻는 질문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3> 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4>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 12. 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문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 1. 1.부터는 10일 이내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7> 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요?

- ☞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8>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 ☞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 2021. 12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5개 법률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공장 등)을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해당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매입
 -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100%)이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중견기업 중심의 “허리가 튼튼한 향아리형 경제” 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 *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국세와 동일)

- ④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 * (기존) 주택 → (개정)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 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고,
 -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최근 가격 상승 등을 고려, 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하여 대다수 경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 ① 그 동안 원자력 등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왔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세율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및 업계 등과의 오랜 논의 끝에 서로 간의 합의를 거쳐 현행 0.3원/kWh에서 0.6원/kWh으로 인상된다.
-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원자력발전: 1원/kWh, 수력발전: 2원/10m³
- 이번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부터 시행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는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되,
-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 별로 1만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③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액에 상응하여 시·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선한다.
-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차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 ('21.8.1.시행)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를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는 전국 시·도로 규정하여,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 또한, 경매, 경륜 등 장외발매소가 유발하는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해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그 소재지 시·군·구에 배분해 주도록 하였으며,
- 지방소득세의 경우 오납으로 국세가 환급되었다는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 ④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만,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3. 납세자 권익 강화

-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이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정 청구 등에 대하여 2개월 이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진행 상황과 불복청구 안내에 관한 사항을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② 끝으로,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다른 정보통신망이 추가되어 민간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전자송달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행정재정부과금의 납부편의가 제고된다.

* 은행사 앱(12개), 카드사 앱(2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3개) 등

- 또한, 과세관청의 직권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 유예 사유로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입 관계법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지방자치단체에 「2022년 시행 지방세입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배포하고, 내년 1월경에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장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세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 '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근거 보완	▶ 다양한 방식* 의 전자신고도입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전자신고 대상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 * 신고 및 인·허가 시스템 등
②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 경정청구의 처리가 2개월 이내에 곤란한 경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 기간이 지난 때부터 불복청구 가능함을 청구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③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납부의무 소멸 시기 등
④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경정청구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현행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 등으로 환원* * (~'16년) 납부일 등 → ('16년~'21년) 경정청구일 → ('22년~) 납부일 등
⑤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 경정청구·불복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⑥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추가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등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
⑦ 지방세 범칙사건 압수물건 인계대상 확대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압수물건 인계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
⑧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공대상 확대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

2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0.3원/kWh에서 0.6원/kWh으로 인상(시행시기 2년 유예, '24. 1. 1. 시행)
②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 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시행시기 1년 유예, '23. 1. 1. 시행)

제목	주요 내용
③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원칙) 1만원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추가)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별 1만5천원 내에서 세율변경 가능 ※ 주민청구의 요건·대상·방법·절차는 조례로 규정
④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 경륜 등 온라인발매분의 레저세는 본장 소재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나누어 귀속
⑤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 국세가 환급된 경우, 그 환급통보를 받은 날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다시 시작하도록 개선
⑥ 상속개시 후 폐차 시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 이전등록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상속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⑦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 부적법한 토지 사용에도 이용현황만을 반영하여 주택으로 과세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이 축소되는 등 불합리 해소를 위해 저율 과세를 배제
⑧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 재산세와 병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분할납부(250만원 초과할 경우)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의료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10%p 추가감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 감면 신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신설
③ 초기중견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감면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감면을 상향(35% → 50%)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⑤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감면 연장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연장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 서민주택(전용면적 40㎡, 취득가격 1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연장

제목	주요 내용
⑥ 항공업·운송업 감면 연장	▶ 항공기·여객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⑦ 친환경 자동차 감면 연장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⑧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한도 상향(50만원 → 75만원)

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목	주요 내용
①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	▶ 전자송달 송달방법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 민간정보통신망 추가 ※ 현재 은행사 앱(12개), 카드사 앱(2개), 간편결제 앱(3개) 등을 통한 전자고지 중으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
② 체납처분 유예 사유 추가 및 신청 근거 명확화	▶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 외 체납자의 신청으로도 체납처분 유예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5 지방재정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구에 레저세 세수 배분 규정 마련	▶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그 소재지 시·군·구에 배분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합니다

- 국세청, 2021. 12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2. 9.(목)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 ‘정부24’ 앱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국세증명을 선택하여 전송하거나 묶음 정보 방식으로 이용

-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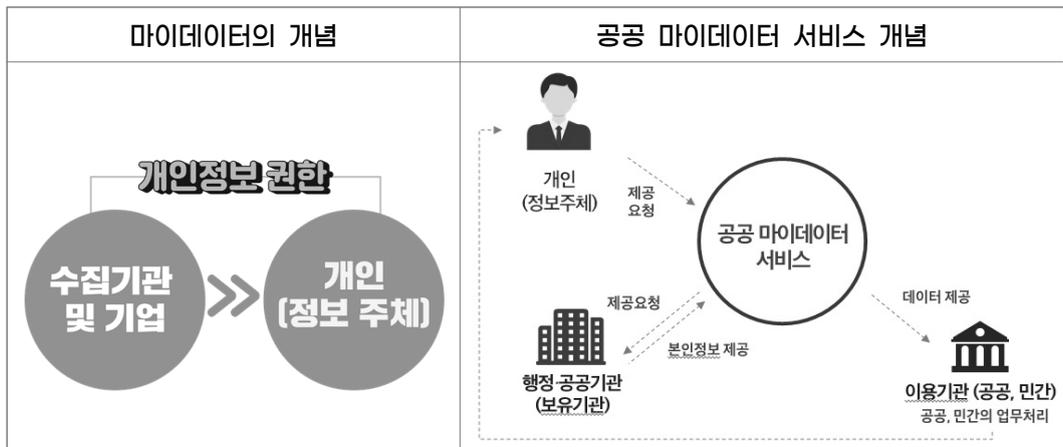
-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납세자는 「전자정부법」상 본인 정보 제공 요구권에 따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국세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 22개 금융회사('21.11월 기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토스뱅크, 하나저축은행, NH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캐피탈, BNK캐피탈, 현대카드, 비씨카드,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캐피탈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각종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종류는?

- 국세청은 정보 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0종으로 하였으며, 향후 이용기관의 수요 등을 분석·반영하여 제공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홈택스·손택스·정부24 등을 통해 발급한 국세증명 건수는 총 78백만 건에 달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

① 납세증명서	⑥ 휴업사실증명
②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⑦ 폐업사실증명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사업자등록증명
④ 소득금액증명	⑨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⑤ 표준재무제표증명	⑩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 다만, 법인은 「전자정부법」상 정보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본인의 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합니다.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 법률 및 정보 주체

근거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정보 이용기관	민원처리기관	행정·공공·민간기관
정보 주체	개인, 법인	개인
주요 내용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또는 민원처리기관에 제공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

3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국세증명 이용 절차는?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됩니다.



-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국민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중 필수 정보만을 선별하여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
 - 국민은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동안 납세자와 이용기관의 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증명을 대폭 개선하여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
 - 납세자의 소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한 새로운 소득금액증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1. 12

【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요약 】

- ◆ (분석 결과) 금융감독원은 핵심감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장사(2,212개사, 12월 결산)의 '20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이하 KAM) 기재실태를 분석
 - *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KAM으로 선정하고, KAM 선정이유, 감사방법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도 제고
 - (KAM 개수) 2,212개사의 1사당 KAM 기재 개수는 평균 1.09개로, KAM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전년(1.18개)보다 다소 감소
 - 자산 규모가 클수록 KAM 개수*가 많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1개)가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1천억원미만(0.97개) → 1천억원~5천억원(1.10개) → 5천억원~2조원(1.22개) → 2조원이상(1.46개)
 - (기재 항목)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을 주로 선정
 -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 항목 제외시, 자산 2조원 이상은 공정가치 평가, 2조원 미만은 재고자산 항목의 비중이 높음
 - (기재 실태)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한 사항(KAM 미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술 등)도 발견
- ◆ (시사점)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 위주로 KAM을 기재하고 있고 발견된 미흡사항도 미미한 수준으로, 핵심감사제도가 비교적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정보이용자도 감사보고서에 활용과정에서 KAM 기재사항을 고려할 필요

I 분석 개요

1 분석 배경

- '17.12월 도입된 KAM 적용 대상이 '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체 상장사(코넥스 제외)로 확대*됨에 따라,
 - * ('18년) 자산 2조원 이상 → ('19년) 자산 1천억원 이상 → ('20년) 전체 상장사
 - '20년 감사보고서의 KAM 적용 대상은 2,212개사(12월 결산법인 대상, 이하 동일)로, 전년('19년 : 1,312개사) 대비 크게 증가(900개사, 68.6%)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전면 시행된 KAM 기재 실태를 분석하여 KAM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감독 업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2 분석 대상

- '20년 감사보고서의 KAM 적용 대상인 전체 상장사(코넥스 제외) 2,212개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 연결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닌 442개사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보고서를 분석

시장 및 감사인 규모별 구분

(단위 : 개사)

구분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계
대형 회계법인	436	278	714
중견 회계법인	213	679	892
중소 회계법인	129	477	606
합계	778	1,434	2,212

자산규모 및 업종별 구분

(단위 : 개사)

구분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합계
제조업	68	1,305	1,373
서비스업	23	400	423
금융업	50	131	181
도·소매업	15	141	156
건설업	8	45	53
기타	4	22	26
합계	168	2,044	2,212

II 분석 결과

1 KAM 개수

- ◆ 상장사(2,212개사)의 KAM 기재 개수는 1사당 평균 1.09개로 나타났는데, KAM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
 - * '18년 1.76개(자산 2조원 이상) → '19년 1.18개(자산 1천억원 이상) → '20년 1.09개(전체 상장사)
 - 자산규모가 큰 회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대형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KAM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총괄) 상장사의 KAM 기재 개수는 총 2,413개, 1사당 평균 1.09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의 상장사*와 비교할 때 아직은 많지 않은 수준임
 - * 영국 프리미엄 상장사 482개사 평균 KAM수 : 3.6개('13년~'18년 감사보고서 기준)
FTSE 350 기업 중 조사대상('13년 153개사, '14년 278개사) 평균 KAM수 : '13년 4.2개, '14년 3.9개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의 1사당 KAM 개수는 1.46개로, 1천억원 미만(0.97개), 1천억원~5천억원(1.10개), 5천억원~2조원(1.22개)의 KAM 개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KAM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자산규모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합계
4개	-	-	-	2	2
3개	1	7	6	7	21
2개	54	98	45	58	255
1개	696	838	198	100	1,832
0개	84	15	2	1	102
합계	835	958	251	168	2,212
(평균)	(0.97개)	(1.10개)	(1.22개)	(1.46개)	(1.09개)

- (시장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평균 KAM 개수는 1.21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많은(18.6%) 것으로 나타남

시장구분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계
4개	2	-	2
3개	17	4	21
2개	139	116	255
1개	608	1,224	1,832
0개	12	90	102
합계	778	1,434	2,212
(평균)	(1.21개)	(1.02개)	(1.09개)

- (감사인 규모) 감사인 규모별 평균 KAM 개수는 대형이 1.21개로, 중견(1.03개) 및 중소(1.04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감사인 규모*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대형 회계법인	중견 회계법인	중소 회계법인	합계
4개	2	-	-	2
3개	13	7	1	21
2개	118	74	63	255
1개	578	754	500	1,832
0개	3	57	42	102
합계	714	892	606	2,212
(평균)	(1.21개)	(1.03개)	(1.04개)	(1.09개)

* 실무수습(2년) 종료 회계사 수 기준으로 구분(대형 600명 이상, 중견 120명 이상, 중소 40명 이상)

- (업종) 업종별로는 건설업(1.13개), 도·소매업(1.13개), 제조업(1.10개)의 평균 KAM 개수가 업종 평균(1.09개)을 상회함

업종별 KAM 개수

(단위 : 개사)

KAM 개수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기타	합계
4개	-	-	1	-	1	-	2
3개	-	1	12	6	2	-	21
2개	7	24	152	40	29	3	255
1개	46	125	1,164	363	112	22	1,832
0개	-	6	44	14	37	1	102
합계	53	156	1,373	423	181	26	2,212
(평균)	(1.13개)	(1.13개)	(1.10개)	(1.09개)	(0.99개)	(1.08개)	(1.09개)

2 KAM 기재 항목

◆ KAM 기재 항목은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

- (총괄) KAM 기재 항목은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 順으로 많게 나타났는데, 동 항목들은 대체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임
 - *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를 손실로 반영(예: 영업권 손상인식, 유형자산 손상인식, 투자주식 손상인식 등)
- (자산규모)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항목,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자산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인 것에 주로 기인

자산 규모별 KAM 기재 항목

(단위 : 개, %)

구 분	1천억원 미만 (835개사)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958개사)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51개사)		2조원 이상 (168개사)		합계 (2,212개사)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수익인식	337	(41.8)	394	(37.4)	95	(31.1)	61	(24.9)	887	(36.8)
손상	143	(17.7)	253	(24.0)	119	(38.9)	85	(34.7)	600	(24.9)
재고자산	106	(13.1)	123	(11.7)	25	(8.2)	10	(4.1)	264	(10.9)
공정가치 평가	77	(9.6)	79	(7.5)	16	(5.2)	29	(11.8)	201	(8.3)
대손충당금	35	(4.4)	54	(5.1)	11	(3.6)	16	(6.5)	116	(4.8)
특수관계자	18	(2.2)	44	(4.2)	7	(2.3)	1	(0.4)	70	(2.9)
연결, 지분법	18	(2.2)	26	(2.5)	7	(2.3)	3	(1.2)	54	(2.2)
법인세	14	(1.7)	21	(2.0)	6	(2.0)	5	(2.1)	46	(1.9)
사업결합	10	(1.2)	10	(0.9)	4	(1.3)	5	(2.1)	29	(1.2)
충당부채	1	(0.1)	7	(0.6)	5	(1.6)	6	(2.4)	19	(0.8)
개발비	6	(0.8)	7	(0.6)	-	-	1	(0.4)	14	(0.6)
리스	1	(0.1)	3	(0.3)	2	(0.6)	2	(0.8)	8	(0.3)
기타	41	(5.1)	34	(3.2)	9	(2.9)	21	(8.6)	105	(4.4)
합계	807	(100.0)	1,055	(100.0)	306	(100.0)	245	(100.0)	2,413	(100.0)

- (업종) 제조·서비스·건설업은 수익인식, 손상 順으로 KAM 기재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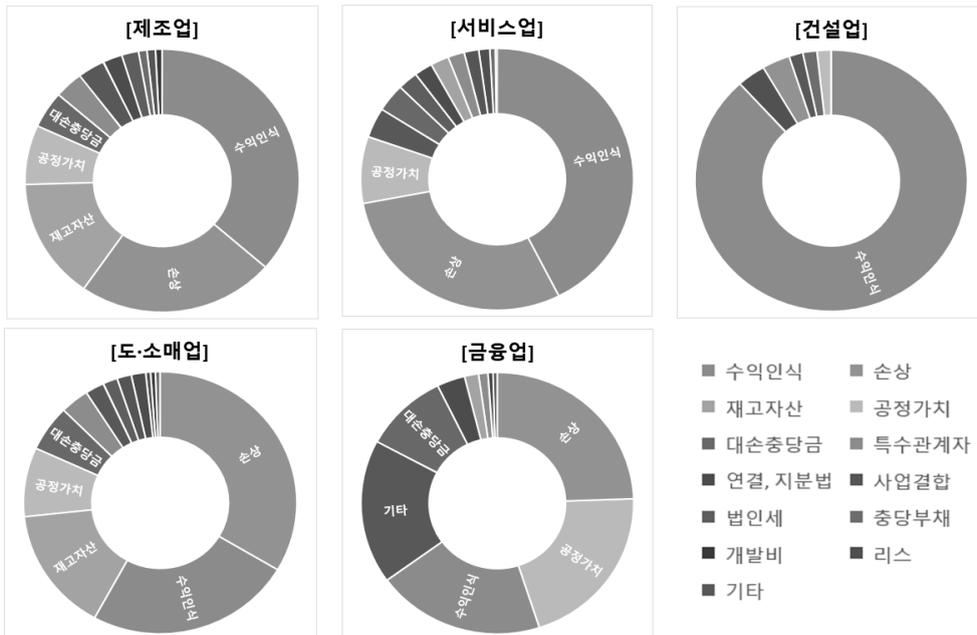
-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수주산업)상 수익인식 기재 비중(88.3%)이 월등히 높았음
- 도·소매업은 손상, 수익인식 順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았고,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기재 비중도 높았음
 - 금융업은 금융자산·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손상, 공정가치 順으로 KAM 기재비중이 높았고, 기타항목(18.3%)으로 보험의 기재비중(7.8%)도 다소 높게 나타남

업종별 KAM 기재 항목 비중

(단위 : %)

구 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업
수익인식	36.4	42.5	88.3	24.4	20.0
손상	23.3	29.5	3.3	33.5	24.4
재고자산	14.9	2.2	-	15.4	1.7
공정가치 평가	7.3	8.2	1.7	8.5	20.6
대손충당금	4.5	3.5	3.3	5.7	10.0
특수관계자	3.4	2.0	-	3.4	1.1
연결, 지분법, 사업결합	3.2	3.9	-	3.4	3.9
법인세	2.0	2.4	1.7	1.7	-
충당부채	1.0	0.6	-	0.6	-
개발비	0.8	0.2	-	0.6	-
기타*	3.2	5.0	1.7	2.8	18.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리스 포함





3 KAM 기재 실태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한 사항(KAM 미기재,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술 등)도 발견되어 개선이 필요

가. 형식상 기재 실태

□ 전체 점검대상(2,212개사)에 대하여 형식상 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 ① (KAM 미기재) KAM이 없을 경우에도 동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누락

- *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KAM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6)

(예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보고해야 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감사기준 701 A58)

- ② (소제목 누락) '핵심감사사항'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소제목 기재를 누락

-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핵심감사사항'이라는 제목의 별도 단락에 적절한 소제목을 사용하여 각각의 KAM을 기술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 11)

나. 내용상 기재 실태

□ KAM 적용 3년차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168개사)에 대하여 내용상 기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 ① (특유상황 미언급) 일부 회사는 KAM 선정 이유 기술시 개별기업의 구체적이고 특유한 (specific) 상황*보다는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 감사인이 KAM 선정 이유 기술시 기업 특유의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감사기준 701 A44)

- ② (관련공시 미언급) KAM 기술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나, 일부 회사는 이를 누락

- * 감사인은 KAM 기재시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한 언급(reference)도 포함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3, A40)

- ③ (계속기업 관련 미언급) 일부 회사는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경우에도 KAM 단락에 이에 대한 언급*을 누락

- *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KAM 단락에 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감사기준 701 문단15(b))

(예시) “우리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단락에 기술된 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술된 사항을 이 감사보고서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감사기준 701 A58,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6.2)

III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 위주로 KAM을 기재하고 있고 발견된 미흡사항도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 도입 3년차인 핵심감사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① 감사인은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충실히 기재할 필요

- KAM을 미기재 하거나, KAM 기재시 기업의 구체적 특유상황보다는 원론적·정형화된 서술을 하는 경우 등 일부 미흡사항이 있어,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감사인은 KAM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여 기업의 특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KAM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

② 정보 이용자는 감사보고서의 KAM 기재 사항에 유의할 필요

- KAM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사항이므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에 해당할 가능성

➔ 정보 이용자는 KAM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보고서 활용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뿐만아니라 KAM 기재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향후 계획)

① 「KAM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및 KAM 모범사례 발굴·배포

- 감사인이 다양한 KAM을 선정하고 KAM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감사인에게 「KAM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회계현안설명회, 품질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유의사항 교육·안내
- 주요 항목별 KAM 기재 모범사례를 발굴·배포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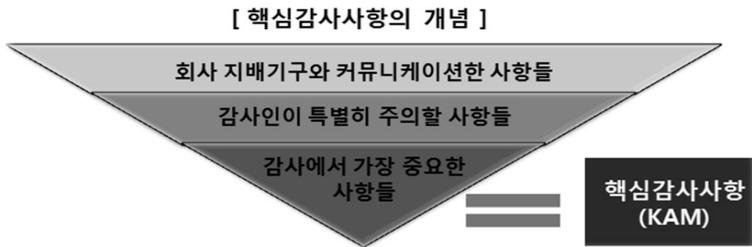
②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KAM 기재사항 활용

- KAM이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분야, 중요한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분야 등에서 주로 선정되므로, KAM 기재사항을 회계심사 업무(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등) 등에 활용하고,

-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KAM 기재 사항을 점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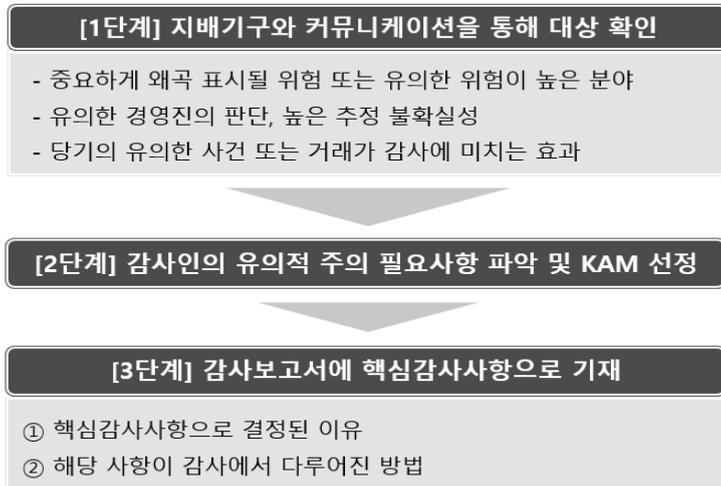
참고 1 - 핵심감사사항(KAM) 주요 내용

- (의미) 핵심감사사항(KAM)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사항 중에서 선택됨



-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상 KAM에 대한 기술은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고, ①KAM 선정 이유, ②KAM 감사방법 및 절차를 다루어야 함

[핵심감사사항 선정절차 및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 (적용대상·시기)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시행일
자산 2조원 이상	2018. 12. 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19. 12. 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자산 1천억원 미만	2020. 12. 15. 이후 발행 감사보고서

참고 2 - KAM 기술 사례 비교(KAM 항목 : 수익인식)

구 분	우수사례 (기업의 특유사항 기재)	미흡사례 (일반적·추상적 내용 기재)
<p>① KAM 선정이유 및 ②공시에 대한 언급</p>	<p>연결실체는 천연가스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매월 각 거래처별로 계량기 검침에 따른 검침량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검침일 이후 결산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하여, 구매량에 거래처별 직전 월의 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각 거래처별 사용량을 추정해서 미고지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 및 주석 3 참조).</p> <p>미고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연결실체 경영진의 유의적인 추정 및 판단이 수반되고, 수익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유의적이므로 천연가스 매출 중 미고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회계처리를 핵심감사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p>	<p>수익은 연결회사의 주요 성과지표 중에 하나이며, 수익이 적절하지 않은 기간에 인식되거나 목표 또는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 조작되는 등 고유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인식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식별하였습니다.</p> <p>(공시에 대한 언급 : 미기재)</p>
<p>③ KAM 감사절차</p>	<p>연결실체의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정책의 적정성 확인 ·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 경영진이 미고지매출의 수익인식 시 적용한 방법론의 적합성 및 주요 가정에 대한 확인 · 연결실체의 미고지매출의 인식금액에 대한 재계산 검증 · 미고지매출의 인식금액에 대한 재무보고일 이후 후속적 확인 · 미고지매출 금액에 대한 분석적 절차 	<p>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 중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세부실증절차 수행 · 보고기간말 전후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수익인식의 기간귀속을 확인하는 절차 수행 · 수익인식에 대응되는 매출채권에 대해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외부조회 확인 · 매출유형별로 과거기간과의 실적비교 및 추세 분석 등 분석적절차 수행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 금융감독원, 2021. 12

◆ '21.12.14일,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외부감사 의무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1.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 '21.7.13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8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평균 28개사 보유)
-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합니다.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기대효과 및 시행일정

-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되며, 동 제도 도입 준비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동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21.7.13일)되었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 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 2021. 12

※ '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설명자료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됩니다.
 -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22.6월 中, 잠정)
- ◆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퇴직연금 시장현황

□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 21.9말 현재 266.0조원('20말 대비 +10.5조원)으로, 가입 기업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 퇴직연금 가입기업(가입률) : ('15말) 31.3만개(25.6%) → (' 19말) 39.7만개(27.5%)
- 저금리 기조와 직접투자 관심 증가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이 개별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 IRP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 * 개인연금저축·IRP 납입분에 대해 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부여

※ (DB, 확정급여형)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
 (DC, 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 수령 (IRP, 개인형) 근로자 등이 개별가입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DC형태)

【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조원, %) 】

구 분	'18말		'19말		'20말		'21.9말		'20말대비 증가율(%)
	비중								
확정급여형(DB)	121.1	63.8	138.0	62.4	153.9	60.2	151.2	56.9	△1.8
확정기여형(DC)	48.7	25.6	56.8	25.7	66.1	25.9	71.9	27.0	8.8
개인형(IRP)	20.1	10.6	26.4	11.9	35.5	13.9	42.9	16.1	20.8
합 계	190.0	100.0	221.2	100.0	255.5	100.0	266.0	100.0	4.1



- 한편,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80~90%)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편입비중(%) : ('18) 90.3 → ('20) 89.3 → ('21.9.) 86.4
 - 최근 DC·IRP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등) 편입 증가*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 실적배당형 편입비중(DC/IRP, %) : ('18) 15.9/24.3 → ('20) 16.7/26.7 → ('21.9.) 20.9/33.7

2.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 디폴트옵션은 DC·IRP형태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시간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 * 제도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에서 同 제도가 도입·안착*되어 있습니다.
 - * 미국은 '06년, 영국은 '08년, 호주는 '13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 (→ 디폴트 옵션상품은 TDF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

- 정부는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하였고,
 -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논의를 거쳐 '21.1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 안호영더민('21.1월), 김병욱더민('21.2월), 윤창현국힘('21.3월)의원안을 병합한 환노위 대안

3.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 제도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 세부내용

◆ 앞으로 DC·IRP 퇴직연금은 가입자 운용지시 부재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① (디폴트옵션 범위)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됩니다.(§ 21의2①)

※ (TDF) 은퇴연령 등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 (MMF) 안전한 단기금융상품(RP 등)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인프라펀드)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디폴트

트옵션을 마련합니다.(§ 21의2②)

*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부 승인을 거쳐야 함

☞ (마련원칙) 디폴트옵션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이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21의2④)

② (해당 기업)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합니다.(§ 21의2③,⑤)

※ 개인이 개별 가입하는 IRP의 경우 미해당(가입자가 바로 디폴트옵션 지정 → ③)

③ (가입자)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설명)* 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합니다.(§ 21의3①,②)

* 디폴트옵션 자산배분 현황, 발동요건, 그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 예)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해 디폴트옵션인 A운용사의 TDF 2050, B운용사의 채권형 펀드, C운용사의 MMF 등을 제시 → 가입자는 TDF 선정

④ (발동요건) 가입자가 ①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②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既지정한 디폴트옵션*을 적용합니다.(§ 21의3③~⑤)

* 사전지정-발동기간간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한 경우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절차를 거쳐 변경된 옵션 적용

①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 운용지시없이 2주가 경과하면 적용됩니다.(총 6주 소요)

* 최초 계약시 또는 기존에 운용지시한 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할 수 있습니다(opt-out).

②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opt-in).(§ 21의4)

⑤ (공시)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비용 비교를 통한 선택권 보장과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수익률 등이 공시*됩니다.(§ 21의3⑥)

* 구체적 공시형태와 공시내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⑥ (시행일) '21.12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 22.6월 예상)될 예정입니다.



4. 기대효과

- 디폴트옵션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입자)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퇴직연금 시장)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추진계획

- 고용부·금융위·금감원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
-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 발표

※ (일임형) 기업이 전문가(투자일임업자 등)에게 적립금 운용을 일임(DB)
 (기금형)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 목적의 기금을 설립하고 전문가가 전담하여 운용